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2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용혜인 · 황운하 · 손 술
이수진 · 정혜경 · 윤종오
전종덕 · 이주희 · 소병훈
김남희 · 서미화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검정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최근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경찰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된다.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실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은 경찰 권한의 분산을 목표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되었음.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대안 입법이 필요함.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의 절대다수이고 독립적 사무

기구의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이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6명(상임위원 2명 포함, 상임위원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전문가 2명 중 선출), 대통령 지명 3명(위원장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1항).

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의2 및 제10조의3).

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
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
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규칙
·준칙 등의 제·개정 등으로 하며(안 제11조의2제1항),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 의무, 심의의결 사항
불이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2
항부터 제5항까지).

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사무기구 소
속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
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안 제11조
의6제1항 및 제2항),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인권침해 조사 방법 등
을 규정함(안 제11조의6제5항).

차. 경찰청장 임명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폐지하고 위원회에

제청권을 부여함(안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9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을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의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를 “최소 2명 이상은 인권 옹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되, 그 중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명 중에서 선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위원장을 포함한다)

② 위원은 경찰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인 사람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⑥ 위원의 구성 중 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면직된다.

제10조의3(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4.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
5.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7.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8.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9.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국무총리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12.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의 감독
13.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2.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

의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4.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5.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6.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7. 인사, 예산, 치안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8.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9. 제11조의6제6항의 국가경찰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10.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에 대한 동의
- ②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결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감사, 감찰, 징계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1조의6제6항의 국가경찰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매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
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1조의4(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
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가 종료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 사무기구의 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상임위원 중 1명을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구성 중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6(국가경찰인권감독관) ① 국가경찰의 인권 의식의 향상과 그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둔다.

②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3. 국가경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4. 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 교육 및 홍보
5.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6.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7. 그 밖에 국가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조사관을 두되, 인권 분야 비영리단체, 법인, 국제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권 분야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정인, 피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 사항과 관련된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자료, 유체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5.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사무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요구

⑥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감찰 또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7(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제11조의6제4항의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제청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아니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사람을 임명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위원회가”를 “해당 시·도 교육감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을 “당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정보원 직원”을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한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4.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제2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

찰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명, 국가경찰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소관 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가 승계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위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u>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u> ② <u>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 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u>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u>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u>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u>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u>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u> ② <u>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u> <u><삭 제></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u> ② <u>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u>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

③ -----최소 2명 이상은 인권 옹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삭 제>

<삭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되, 그 중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명 중에서 선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위원장을 포함한다)

② 위원은 경찰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

3. 정당의 당원인 사람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⑥ 위원의 구성 중 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 ·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면직된

<신 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0조의3(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4.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

5.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
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
휘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7.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
항

8.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9.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국무총리 및 경찰
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12.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의
감독

13.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

<신 설>

청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2.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4.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5.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6.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7. 인사, 예산, 치안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8.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9. 제11조의6제6항의 국가경찰 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10.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에 대한 동의

②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결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감사, 감찰, 징계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의6제6항의 국가경찰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은

<신 설>

<신 설>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매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위원회 회의 등) ① 위

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신 설>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가 종료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 사무기구의 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상임위원 중 1명을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구성

<신 설>

중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6(국가경찰인권감독관)

① 국가경찰의 인권 의식의 향상과 그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둔다.

②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3. 국가경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4. 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 교육 및 홍보
5.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6.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

원의 조사 및 처리

7. 그 밖에 국가경찰의 인권의
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위원
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한
다.

④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공정
하고 신속한 조사 업무를 보좌
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조사
관을 두되, 인권 분야 비영리단
체, 법인, 국제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그에 상
응하는 인권 분야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
집한다.

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정인, 피진정인 등
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 사항과 관련된 국가경
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출석요
구, 진술 청취 또는 의견서

<u><신 설></u> 제14조(경찰청장) ① (생 략)	<u>제출 요구</u> 3. <u>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u> 4. <u>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자료, 유체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u> 5. <u>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사무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요구</u> ⑥ <u>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감찰 또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u> <u>제1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제11조의6제4항의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14조(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
---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 ⑩ (생략)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u>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u>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u>국가경찰위원회가</u> 추천하는 1명 3. <u>해당 시·도 교육감이</u> 추천	음) ② ----- -----<u>제청으로</u>-----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아니하여야</u>----- -----. ③ ----- ----- -----<u>사람을 임명하여야</u>----- -----.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 ----- -----. 1. -----<u>3명</u> 2. <u>해당 시·도 교육감이</u>----- ----- 3. <u>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u>
---	---

<u>하는 1명</u> 4. <u>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u> <u>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u> 5. <u>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u> ②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u>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2. (생략) 3. 경찰, 검찰, <u>국가정보원 직원</u>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5. (생략) ⑧ (생략)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u>행정안전부장관</u>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	<u>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u> 4. <u>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u> <삭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1. -----<u>당원인</u>----- ----- ----- 2. (현행과 같음) 3. -----<u>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u>----- ----- ----- 4. 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시·도지사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u>
--	---

<u>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u> <u>· 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u> <u>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u> <u>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u> <u>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u> <u>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u> ⑤ (생 략)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u>----- ----- ----- ----- ----- -----. ⑤ (현행과 같음)
--	--